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465 제출연월일: 2024. 8. 30.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 제품
-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제11조제2항 중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입자·양수자로부터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附則(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매입한 과세물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에 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 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

률,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	
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u>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u>당하는 물품</u>
<u>가짜석유제품</u> 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u><신 설></u>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u>따른 가짜석유제품</u>
<u><신 설></u>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
	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
	지 않고 공급(「부가가치
	세법」 제33조제1항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과세물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 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 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 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 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 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附則(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

② <u>다음 각 호에 따라</u>

-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 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반입자·양수자로 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 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
- ③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4667호 交通稅法 附則(법률 제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

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 • 에 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 • 에 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 법률 제18584호 교통・에너지・환 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12월 31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4년</u> 제2조(유효기간) ----- <u>2027년</u> <u>12월 31일</u>-----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무자료유류 판매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추	정	곤	란		
	(§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امخ	유효기간 3년 연장	108,436	108,436	108,436	△108,436	△108,436	108,436	21,687
수입	(법률 제4667호 부칙	100,400	100,430	70 100,430	△100, 1 30	△100, 1 30	100,430	21,007
	제2조)							
	개별소비세 전환	△108,436	△108,436	△108,436	108,436	108,436	△108,436	△21,687
	소 계(B)	0	0	0	0	0	0	0
총비	용(A-B)	0	0	0	0	0	0	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1조(가짜석유 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세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
2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일몰되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의 3년 연장에 따른 세수증감은 없음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특별회계 및 기금* 재원으로 배분되었으나,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보통세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배분 *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여	
2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부	무자료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유류 규모를 정확 하게 파악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 O 비용추계 시 '23년 세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3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 세수증감 없음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으로 전환됨(탄력세율 적용 가정) 에 따라 세수변화 없음(법률 제4667호 부칙 제9조)
- 특별회계 재원 유지: 108,436억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강희중	이정아	김정주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아	044-215-4331	ja9595@korea.kr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사항 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ㅇㅇ기금						
□ 기타						
Ó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0	해당사항	없음				

Ⅳ.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강희중	이정아	김정주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아	044-215-4331	ja9595@korea.kr	